■ 주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5. 3. 21.>

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

❶ 신청인	성 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상 호(법인명)	
	주 소(본점 소재지)	전화번호
	제조장 소재지	전화번호(전자우편)

❷ 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❸ 주세율 경감

① 요 건		② 검 토 내 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해당 주류	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	• 「주세법」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	적 합 (Y) 부적합 (N)	적정 (Y) 부적정 (N)
경감 대상	ㅇ "가" 또는 "나"를 충족할 것 가.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- 발효주류: 1,000kL 이하 - 증류주류: 500kL 이하	•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	적 합 (Y) 부적합 (N)	
	나.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	• 제조면허 발급연도: (년)		
유예 기간	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	• 사유발생 주조연도: (년)	적 합 (Y) 부적합 (N)	

전통주의 종류	주류의 종류	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(kL)

⑤ 경감명세

전통주의 종류	주류의 종류	경감세율	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(누계액)		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		총경감명세	
			수량(kL)	세액	수량(kL)	세액	수량(kL)	세액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① 요건(해당주류)에 대한 ② 검토내용(해당주류)란의 「주세법」 제2조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·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
-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·군·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

2. ① 요건(경감대상)에 대한 ② 검토내용(경감대상)란의 "전통주의 종류"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, "주류의 종류"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"발효주류" 또는 "증류주류"를 적습니다.
- 발효주류: 「주세법」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
- 증류주류: 「주세법」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

3. ① 요건(유예기간)에 대한 ② 검토내용(유예기간)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.

4.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"적합(Y)" 또는 "부적합(N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5.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(해당주류·경감대상)이 동시에 충족되거나, ① 요건(유예기간)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"적정(Y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6. ⑤ 경감명세의 경감세율란에는 「주세법」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.
- 발효주류: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%,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kL 초과 4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%
- 증류주류: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50%, 해당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kL 초과 2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30%

7.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400kL, 증류주류의 경우 200kL를 넘지 못합니다.